

이슈브리프 836호
(2026. 4.28)

남부국경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정전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공존의 모색

제836호

김원식 kimphil@inss.re.kr



국문초록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군사분계선(MDL)을 '남부국경선'으로 재정의하고 요새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을 넘어 정전협정 체제를 부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기존의 잠정적 경계선을 영구적인 국경으로 고착화함으로써 남북의 물리적·법적 단절을 꺾는 시도이며, 향후 우발적 충돌이 '영토 침략'으로 규정될 경우 확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역설적으로 평화공존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 요구는 결국 타자인 남한과 미국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이를 새로운 공존의 규칙을 합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 동서독이 기본조약에서 '국경' 명칭을 둘러싼 대립 끝에 '기존의 경계(bestehenden Grenze)'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타협했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향후 추진될 '남북기본협정'은 이러한 역사적 지혜를 빌려, 우리의 헌법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분단된 두 국가의 현실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협상 전략을 담아내야 한다.

주제어 : 남부국경선, 적대적 두 국가론, 인정투쟁, 남북기본협정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하여 군사분계선(MDL)을 ‘남부국경선’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요새화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의 변경을 넘어 정전협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남북의 물리적·법적 단절을 고착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선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남북의 ‘이름’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한쪽은 이를 여전히 언젠가 사라질 ‘잠정적 경계’로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이를 ‘영구적 국경’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국경화 시도가 초래할 도전과 위험을 진단하고, 이를 새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사분계선과 남부국경선: 하나의 선, 두 개의 이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MDL)은 국제법상 일반적인 ‘국경선’이 아니라 전쟁의 일시적 중단과 양측 군대의 분리를 위해 설정된 군사적 통제선이다. 정전협정의 목적 자체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데에 있는 만큼, 군사분계선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경계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 이후 2024년 10월을 기점으로 이 선을 ‘남부국경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에 장벽을 설치하는 물리적 국경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남부국경선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경 요새화’ 및 국경 방어를 위한 군사력 배치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국경화 시도는 단순한 이름의 변경을 넘어 현실적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분계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그간 남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해온 정전체제 및 UN사 기능 무력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정전 관리 기구의 마비는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과 확산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되었던 사안들이 ‘영토 침략’으로 규정된다면, 충돌의 양상도 격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서해 NLL 인근에서 북한이 독자적인 ‘남부 영해’까지 주장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공존 방식의 모색

정전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성을 앞세우는 북한의 국경화 시도가 우리에게 대한 안보적 위기이자 위협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우리의 대응 방식에 따라 남과 북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능력과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 설정이 우리에게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핵을 통한 인정투쟁(Kampf um Anerkennung)을 통해 결국 원하는 것이 북한을 독립적인 별개 ‘국가’로 인정하라는 것임도 명백하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설정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외부 사상과 문화 침투에 대한 경계심의 산물임은 북한 당국의 여러 언술을 통해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인정이 타자의 인정일 수밖에 없는 한에서, 북한의 국가성 인정 요구는 결국 다른 주체인 한국과 미국의 인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공존이 타자와의 공존인 한에서 북한의 공존 의지를 확인하고 공존의 규칙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남과 북 사이 인식의 간극을 메우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마주 앉아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구상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이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족 담론이나 특수관계론에 기반한 기존의 남북합의 틀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재설정을 위한 새로운 틀의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북관계 재설정을 위한 과제

향후 남북관계 재설정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시도할 경우 북한의 국가성과 국경선 인정 여부 등을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며, 과거 동서독기본조약(1972) 체결 당시 서독 내부에서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던 바 있다.

남북기본협정을 통한 남북관계 재설정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논의와 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사전 검토와 준비가 불가피할 것이다. 먼저 내부적으로 향후 남북관계 재설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가피한 논란들에 대한 사전 논의들이 필요하다.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북한은 향후 남북관계 재설정 과정에서 만남의 명칭과 형식부터, 예를 들어, 북남회담이 아닌 조한 회담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을 한 민족이나

통일의 상대방이 아닌 별개 국가로 공식 인정하라는 요구 역시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요구들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논의와 사전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떤 선에서, 어떤 정당성 근거 하에 남북관계를 재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내부의 고민과 더불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비 역시 필요하다.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 과정에서 북한이 두 국가 주장 자체를 철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9차 당대회와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두 국가론 기조를 다시 한번 공식화한 마당에 이를 철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의 상이한 입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보다 세밀한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우리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당시 동독 역시 오늘날의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경선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 역시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완전한 국경 승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조약에 ‘국경(Staatsgrenze)’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동서독 기본조약 3조는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양국은 양국 간 기존 경계(bestehenden Grenze)의 불가침성을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재확인하며, 상대국의 영토 보전에 대해 무조건적인 존중의 의무를 가진다.” 이는 동독의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동국의 국가성과 국경선의 존재를 일부 승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위 조항이 동독이 주장했던 국경선이나 서독에서 사용하던 독일내부경계(Innerdeutsche Grenze) 대신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두 국가 관계 속 동독의 영토 보전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명시하는 것은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 재설정 과정 역시 불가피하게 북한의 ‘두 국가론’과의 일정한 타협과 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 민족사에 대한 역사 의식 속에 분단된 두 국가 현실과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국경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어딘가에서 선의 소멸을 통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